의안 번호	1183

울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연월일 : 2015. 11. 20.(금)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회부 : 2015. 11. 23.(월)
라. 위원회심사 : 2015. 12. 10.(목)

2. 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2015.7.1.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함

4. 근거법규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